

한국의 미투, 남은 것과 남긴 것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1. #미투(Me Too), 혁명이 시작된다

2018년 우리나라 #미투운동은 지금까지 반(反) 성폭력운동 역사의 그 어느 시기, 사건, 운동보다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진행 중이다.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시발점으로 연극계·영화계·문단 내·종교계·체육계·군대 내·기업·대학 내·중·고등학교 등 각 분야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공개적인 말하기가 이어졌다. 그동안 가부장제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일상적으로 행해진 성적 폭력에도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던 부당한 사회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나은 사회를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이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말하기(speak out)’가 모여 혁명을 일으켰다. 미투운동은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게 했고, 정부와 국회를 다양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게 만들었

다.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수 많은 여성배우와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력한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발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미투운동이 퍼지고 있는 현상도 외부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가 이름을 밝히거나 직접 얼굴을 드러내어 방송이나 신문,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성폭력 사실을 말하는 방식은 이전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피해를 밀해봤자 오히려 손해고 더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피해자 스스로 입을 다문 채 지내야 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을 하던 1990년대 초반, ‘성폭력’이란 개념조차 생경하고 형법32장의 제목에 명시된 ‘정조에 관한 죄’로 성폭력을 인식하고 판단했던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진정 다른 세상이

*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는 반(反)성폭력 운동단체 활동가. 성폭력 2차 피해와 피해자 권리, 관련 법·정책 등에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마르지 않는 샘인 ‘이론과 현장’의 건강한 순환을 꿈꾸며 현장활동과 연구를 하고 있다.

다. “나도 그래(Me Too)”운동은 성폭력이 특정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경험이며, 성폭력과 맞서는 싸움에 함께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다. 서로에게 힘과 용기, 지지의 메시지이다. 나아가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우리 사회의 변혁을 요구하는 강력한 목소리이고 실천이며 감동적인 연대이다.

이번 미투운동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듯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형사사법절차를 이용하기보다 방송이나 SNS를 활용해 피해사실을 공유하고 연대한다는 것은, 지난 30여년 동안 반(反)성폭력운동에서 심혈을 기울여 구축해온 법·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이 용기내어 고소를 해도 기소율은 46%(대검찰청, 2018)에 머물고, 특히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25%가 성폭력 2차 피해를 겪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나아가 피의자/피고인으로부터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 되어 하루아침에 성폭력 피해자에서 무고 피의자의 신분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맞기도 한다. 그럼에도 미투운동의 물결은 멈추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미투시민행동’)>에서 주최한 20여회의 집회에서 “우리는 결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 것이다”는 구호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러한 역동을 이끈 #미투운동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들불처럼 이어지고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이고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다각도에서 깊이 있는 경험적·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글에서는 반(反)성폭력운동 현장활동가의 위치에서 본 #미투운동이 가져온 변화와 그로 인한 도전과제

를 짚어보고자 한다.

2. 오래된 #미투운동, 이제 듣는 귀와 가슴이 열리다!

대부분 #미투운동을 2018년에 일어난 현상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오래 전부터 미투는 있어 왔다. 미국에서도 2006년도에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가 처음 이 용어를 제안했고, 2017년 10월에 폭로된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확산해 온 배경이 있다. 우리나라로 2018년 1월 29일, 현직 검사가 jtbc 뉴스룸을 통해 8년 전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드러내면서 #미투운동이 촉발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고발이 가능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수 많은 피해자들이 공식·비공식적으로 피해를 밀해왔다.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1988년 성추행 범의 혀를 깨문 피해자가 오히려 상해죄로 기소되었던 사건, 1991년 일본군 성노예제를 최초로 문제제기 한 김학순님의 말하기와 21년전 강간범을 살해한 김00사건 등이 있다. 1992년 13년간 의붓딸을 강간한 아버지를 남자친구와 살해한 사건, 1993년 서울대조교성희롱 사건 등 봇물처럼 터져나온 성폭력 사건 속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말하기와 분투가 있어왔다. 이와 함께 한국여성의전화(1983), 한국여성민우회(1987), 한국여성단체연합(1987), 한국성폭력상담소(1991) 등의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이 생겨나고,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의 성과로 1994년에는 관련법도 마련되었다.

2003년부터는 공개적인 말하기가 시작되었다. 매년 전국 몇몇 성폭력상담소들에서 개최하는 ‘성폭력피해생존자 말하기대회’를 통해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세상아 들어라, 나는 말한다”¹⁾라며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해왔다. 특히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이후 “단지 여자라서 죽었다”는 공분과 함께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터져나왔다. 당시 희생된 여성은 추모하고 여성혐오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한 다짐들을 적은 37,109장의 포스트잇은 본격적인 #미투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이 포스트잇 자료들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한자 한자 타이핑을 하고 사진으로 찍어 아카이브를 만들었고,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대중이 접할 수 있다.²⁾ 또한 2016년에 시작된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이미 공개적인 미투의 출발을 알렸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2018년 1월에 본격적인 #미투운동이 시작되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 170개의 성폭력상담소 상담창구를 통해 약 24만 건(국가지표체계, 2019)의 성폭력 피해 상담이 접수되었다.

미투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한국여성진흥재단(2018)에서 20~50대 성인남녀 1,0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투운동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미투운동의 인지도는 전체 응답자의 75.2%로 나타났고, 응답자 88.6%가 미투운동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미투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에 응답자 73.1%가 용기있는 행동을 격려해주고 싶다고 했다. 언론에서 연일 미투운동을 단신부터 기획기사, 특집기사 등으로 다루고 있고, 한국여성학회, 젠

더법학회, 비판사회학회 등 각 학회에서도 학술대회에 미투세션을 배치했다. 뿐만 아니라, 미투운동은 국회나 관공서, 각급 학교,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개최한 세미나와 특강의 단골 주제였다. 무엇보다 2018년 #미투운동이 과거의 여러 사건들이나 운동에 비해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우리 사회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여러 불이익과 고통을 감수하고도 “가해자를 면추게 하기 위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선 피해자들의 미투에 대중들도 공감하고 지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3. 여성운동의 새로운 지도,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으로 하나 되다

우리나라 #미투운동의 중심에는 용기있는 피해자들의 말하기와 해시태그운동이 있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며 운동으로 이끌어온 전국 340개 단체가 연대한 미투시민행동이 있다. 이 연대체의 출범 배경은 1월 29일 서지현검사의 미투 이후, 2월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연대하여 “검사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전국 16개 지역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2월 12일에 ‘검찰 내 성폭력·성차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다가 3월 12일에 연대단위를 넓혀 미투시민행동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미투시민행동은 “#미투운동에 대한 책임을 통감

1) 한국성폭력상담소(2003), ‘제1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의 공식 슬로건이다. 이후 매년 진행해오고 있는 이 행사는 우리사회 성폭력의 의미를 바꾸고 생존자들이 힘을 내며 연대하는 장이다.

2) <http://www.genderarchive.or.kr/exhibits/show/postit/ex2-p5>(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성평등도서관 여기, 성평등 아카이브)

〈표 1〉 2018년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현황

차수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1차	2018. 3. 23(금) 오후 7시	청계광장과 종로 일대	1,000명	#미투운동의 핵심은 성차별과 성폭력이며, 더 많은 말하기가 쏟아져야 한다고 믿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서로에게 힘을 심기
2차	2018. 4. 7(토) 오후 7시	연남동 경의선 숲길	1,000명	#미투운동의 핵심이 성차별적 구조라는 것을 알리고,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3차	2018. 4. 21(토) 오후 7시	혜화역앞 도로, 광주, 전주, 대구, 김해, 포항 (동시)	1,500명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 서울지역에서는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 '직접 만드는 피켓 만들기' 등 진행
4차	2018. 5. 17(목) 오후 7시	신논현역 6번 출구 앞 강남역일대	2,000명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2주기를 기리며 여성의 안전하고 성차별·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차별적 사회구조 개혁 주장
5차	2018. 8. 18(토) 오후 5시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	20,000명	안희정사건의 무죄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로 횃불 퍼포먼스, 거리행진 등 진행
6차	2018. 12. 1(토) 오후 5시	광화문 광장	500명	결국엔 바꾼다 미투가 해낸다
기타	2018. 11. 10(토) 오후 1시	서울 다시세운광장	218명	2018년을 기억하는 218명의 시민들이 모여 미투 말하기를 가로막았던 것들을 부수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선언

자료 : 한국여성단체연합(2019), 「제33차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 자료집, pp94-155에서 발췌

하고, 성차별적인 권리관계와 성폭력을 가능케 했던 사회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8년에는 #미투운동을 통해 반드시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 사회적인 연대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취지를 밝히며 지난 3월 15일 출범했다. 340개 연대단체들 중 6개 단체에서 1~2명씩 활동가들을 파견해서 상황실을 꾸려 한 달 동안 시민행동의 운동방향을 기획하고 실행해갔다. 미투시민행동의 첫 연대행사는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2018분 동안의 이어말하기였다. 꽃샘추위 속 청계광장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이어나간 193명의 성폭력피해자들의 말하기는 당일 현장 참여자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생중계를 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자 희망이었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거리에서 말하기를 한다는 것은 성폭력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간 큰 발걸음이었다. 생존자들은 광장에서의 ‘말하기’를 통해 더 이상 수치심은 피해자의 몫이 아니라 가해자의 몫임을 알려내고, ‘피해자다움’의 강요를 면출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시혜나 배려차원에서가 아닌 피해생존자의 권리보장을 요구했다. 미투시민행동에서는 〈표 1〉과 같이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를 지속해오면서 #미투운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시민참여를 이끌어냈고, 일일브리핑, 주간브리핑, 카드뉴스 공유, 1만인 선언, 성명 발표, 토론회 등의 활동을 하고있다.

이처럼 340여 단체가 함께하는 전국규모의 미투시민행동은 지난 1년동안 다양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연대활동의 기틀을 다졌다. 특히 미투시민행동 상황실에는 각기 다른 단체 활동가들이 거의 함께 생활하다시피 하는 일정 속에서 개별단체 활동

〈표 2〉 2019년 미투시민행동의 “페미시국 광장” 집회 현황

차수	일시(장소)	내용	주관단위
1차	7/12 (동화면세점 앞)	시위는 당겨졌다. 시작은 조선일보다	한국여성민우회
2차	7/19 (동화면세점 앞)	‘버닝썬’, 핵심은 강간문화카르텔이다. 공조세력 경경을 갈아엎자!	한국여성단체연합
3차	7/26 (동화면세점 앞)	‘김학의 사건’, 본질은 성폭력이다! 검찰이 주범이다!	한국여성의전화
4차	8/2 (동화면세점 앞)	본질은 성폭력이다. 양진호를 처벌하라 웹하드카르텔 성폭력산업 제대로 수사하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5차	8/9 (동화면세점 앞)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개혁, 우리가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6차	8/23 (동화면세점 앞)	검경개혁 여자들이 한다!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	한국여성의 전화
7차	8/30 (동화면세점 앞)	‘국산 아동’ 유통 사이트 처벌하라! - 초범이라 기소유예, 반성해서 기소유예, 검찰을 규탄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8차	9/6 (동화면세점 앞)	일상의 남성카르텔, 우리가 부순다!!	한국여성노동자회
9차	9/20 (동화면세점 앞)	‘성착취’ 카르텔 박살내자	전국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10차	9/28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타	11/29 (홍대입구역 7번출구앞 광장)	애도하고 말하고 노래하는 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가들은 친밀감을 넘어 여성운동 동지로서 하나되는 경험을 하였다. “매일매일 새로 터지는 이슈에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의식과 대응방식은 닮아있기도 하고 또 확연히 다르기도 합니다. 각 단체의 성격이 드러나는 순간마다, ‘바로 이런 차이들이 다양한 여성운동의 모습들로 다채롭게 엮어지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달 동안의) 상황실을 마무리하면서 이곳에서의 경험은 앞으로 제 활동에 큰 자양분이 될 것 같아요”라는 한 활동가의 후기가 이를 말해준다(감이, 2018). 이는 상황실 근무 활동가만이 아니라 거리에서, 토론회장에서, 법정에서 만나는 활동가와 시민들이 다 같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

었던 ‘아름다운 연대’의 힘이었다.

2019년에도 미투시민행동의 연대활동은 계속되었다. 특히 2009년 고 장자연배우의 죽음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버닝썬 사태 등을 통해 드러난 검찰의 남성권력 카르텔을 비판하며 〈표 2〉와 같이 연속 10회에 걸쳐 ‘페미시국 광장’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지난 2년여 동안의 활동이 몇몇 큰 단체 중심이 아닌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운동의 방식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미투시민행동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뿐만아니라, 낙태죄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연대

하며 사회변화를 향한 발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스쿨미투의 물결도 거세다.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교사 성폭력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한 용화여고 미투운동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2018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말하기 시작한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스쿨미투 집회를 36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올 2월, <청소년 폐미니즘 모임>에서는 단체 활동가들이 직접 스위스 제네바로 달려가 UN 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한민국 정부에 쟁점질의 목록으로 스쿨미투를 포함하도록 하는 활동을 했다. 이 단체는 학교 성폭력에 대한 전수조사, 교원대상 폐미니즘 교육 의무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공공성 보장, 학교 성폭력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 수사를 요구했다(일다, 2019). 이중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에 준해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의 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에 통과되었다. 광주에서는 11월 25일 성·가정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스쿨미투는 졸업하지 않았다! 학교 성폭력 아웃”이라는 슬로건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2019).

4. 정부와 국회, #미투관련법을 바꾸고 정책을 세워가다

미투운동이 시작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2018. 2. 26)에서 “미투 운동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젠더폭력

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공공부문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선도해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엄격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정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 시 즉시 퇴출되고,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3월부터 100일간 한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지현검사가 미투를 한 지 한달 이내에 마련된 조치로, 정부는 빨빠르게 대응을 시작했다.

정부 각 부처 간의 벽을 넘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2개 부처(국조실, 여가부,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인사처, 경찰청)의 차관들과 12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협의회’도 설치(2018. 3. 8)되었다. 이 추진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협의 및 조정,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세부 이행계획 수립, 이행상황 점검 등이다. 지금까지 7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으며, 각 부처별로 관련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전체회의에서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인상적이다. 범정부 대책은 크게 1) 특별점검 및 사회각분야 실태조사, 2) 피해자 신고 및 상담지원, 3)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4) 가해자 제재 및 처벌 강화, 5) 예방 및 인식개선, 추진체계 강화로 구성된다(여성가족부, 2018). 피해자의 신고를 가로막는 2차 피해의 두려움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제4차 협의회부터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해서 ‘범정

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로 개칭하였다.

아쉬운 점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부처별 역할분담이라기보다 각 부처 내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무게를 둔 대책 위주라는 것이다. 또한 예방교육의 의무화는 강조되지만, 실효성 있는 교육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처벌의 강화 법안이 거론되지만,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지난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괄목할만한 변화는 정부 8개 부처³⁾에 성평등 전담직제인 '양성평등담당관'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에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2000년대 초반 정부 6개 부처에 신설되었다가 사라진 '여성정책담당관' 제도의 교훈을 상기해야 할 부분이다.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의 의지를 갖고 총괄 조정을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 탄탄한 기반을 형성하지 않으면 또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도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2018. 2. 26, 더불어민주당) 개최를 비롯해 법안 발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미투관련 법안이 145건이지만 이중 35건만 통과된 상태이다(서울신문, 2019). 성폭력 관련법에서 기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성폭력을 보는 관점이라고 본다. 현재 국회에는 성폭력을 폭행과 협박의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여부로 판단해야한다는 의미에서 비동의간음죄를

규정한 법안이 10개 상정되어있다. 전국의 209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 국회토론회 개최 및 5차례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고, 형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 법 이외에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조정이 논란이 되고 있고,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사실적 명예훼손죄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민사소송의 소멸시효 특례 등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2차 피해와 무고죄 등 역고소 현상은 미투운동에 위협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이미경, 2018). 실제 상담현장에서 보면, 성폭력 수사·재판 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통념에 의해 '(보호할 만한)순수한 피해자상'에 부합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심하고 비난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과거 성력을 캐묻거나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 체계에서 합리성이나 객관성의 이름으로 피해자들에게 요구하는 '피해자다움'은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어 2차 피해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성이력 증거사용 배제에 대해 성폭력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 등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강병훈, 2018)가 있으나,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제할 필요 있다. 미국의 경우, 성이력 증거사용 배제를 명시한

3)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피해자의 보호와 같은 정당한 이익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양보될 수 있으므로 이 법이 피고인의 증인대면권과 반대신문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윤지영, 2018:86).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상 특례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성이력 증거사용 배제 조항도 이 법에 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등의 법조항은 용어가 갖는 상징성 및 파급성을 고려해 ‘성적욕망’의 폐기 및 ‘수치심’을 ‘모욕감’ 등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형사사법절차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높힐 수 있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전담인력들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쌓일 수 있는 제도운영이 아니라, 순환보직제로 인해 2년 이내에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정부는 성폭력 2차 피해 근절을 위해 수사·재판담당자들에게 인권감수성 및 성폭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관련자의 징계나 처벌 등의 적정한 조치의 의무화를 규정해야 한다.

2018년 5월에 법무부는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도록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했다. 이 매뉴얼에 “무고,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각 청에 접수된 경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어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무고,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게 되어있음⁴⁾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항고가 진행 중일 경우에 무고죄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무고죄의 수사나 재판 시에는 피의자/피고인의 신분으로 되면서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나 ‘비공개재판 청구권’ 등 성폭력 피해자로서 갖는 형사사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특히 가명조사 등의 특례도 피의자/피고인 신분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보호되지 못한 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어 심각한 2차 피해에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역고소 시,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와 비공개재판 청구, 가명조서 등 법적으로 보장된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준용할 수 있는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역고소 피의자/피고인이 된 경우,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무고 사안에 대해서도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실제적인 개선책으로 현재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만 규정된 무고죄 수사 특례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 유예시기와 관련해서는 무고죄 고소권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배제하지 않기 위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1심 재판 선고 때까지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윤지영, 2018: 194), 현 수사매뉴얼대로 기소여부가 확정되는 때

4) 이 수사 매뉴얼 개정 발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통해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 요청”이 올라와 20만을 넘음.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수사지침 개정은 수사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했음(2018. 7. 1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로 규정해도 되리라고 본다. 다만, 성폭력 고소 건이 항고나 재항고 등 절차가 진행 중일 때까지는 무고죄 고소 건의 수사는 유예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2018년 한국정부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과 같은 형사소송 절차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방어를 위한 무료 변호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의 피의자로 인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2017).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제4차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에 보고된 12개 부처 2019년 ‘미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안’ 규모는 403억 6,400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예산 중 미투 예산은 368억 2,000만 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은 34억 4,000만 원이다. 정부의 미투시민행동에서 주최한 “#미투운동, 예산을 바꾸다” 토론회에서 미투예산안을 분석한 송민정(2018)의 발표자료를 보면, ‘미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안’의 2019년 규모를 2018년보다 102억 6300만원 늘었으나 내년도 전체 예산의 0.01%에 그쳤다. 예산 규모는 정부 정책의 관심 정도와 정책 실행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투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실제로는 그리 높지 않음을 읽을 수 있다.

5. 법/정책과 현실의 고리 속에 과제들이 남겨진다

#미투운동은 위력성폭력과 상습성폭력 등 그동

안 가려졌던 문제들을 드러내 법적 처벌을 받게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사건해결을 위해 형사사법절차를 선택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지난 11월 19일, 해군 성소수자 대위를 성폭력 한 상관 2명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이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인 고등군사재판부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했던 “눈물도 아깝다. 이리면 누가 성폭력 사건을 고소하겠나”는 말을 재판부를 비롯한 우리사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투운동에 참여한 피해생존자들의 사생활을 들춰내거나 온갖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온·오프라인에 유포하면서 피해자를 흡집내고 모욕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얼굴과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미투가 아니라며 신상공개를 강요당하기도 한다. 언론에서는 경쟁적으로 미투 사건을 보도하면서 선정적인 제목이나 사진 등으로 시선을 끌고, 추측 성 기사를 쓰기도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건 보도 내용과 무관한 선정적 화면을 배치하거나 피해자들은 무조건 ‘눈물 흘리는 모습’을 강조하여 나약하고 불쌍한 피해자상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앞장서기도 한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데에는 피의자나 피고인들에게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변호인단의 상업적 접근이 한 몫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제 성폭력 사건은 ‘시장으로 간’ 물건이 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한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지 원단체에 일방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그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서 감경을 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2017)에서는 이와같은 가해자들의 일방적인 기부가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며 이

를 감경사유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성폭력 역고소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피해자의 무죄로 밝혀진다 해도 일단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버티는 것은 피해자의 뜻이 된다는 점이다.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도 부족할 판에 이에 역행하는 펜스룰(Pence Rule) 현상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펜스룰은 억울하게 성폭력의 가해자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아예 일상에서 여성들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회사내에서 식사할 때나 뒤풀이 등에 여성들을 배제되고 있다. 심지어 업무지시도 대면으로가 아니라 문자로만 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일부 남성들의 사고방식은 성폭력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잠재적 가해자로 낮추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남성이 스스로를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남을 존중할 줄 안다면 일상에서 여성을 꺼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여성은 학교나 직장, 지역사회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거짓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미투운동의 대응책으로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마련된 법과 제도가 실제 이행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가해자 처벌, 그리고 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성편향적인 객관성’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여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는지를 성찰해야한다. 지금까지 법체계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제 피해자의 인권을 돌아보

아야 하며, 무엇보다 남성 중심적인 한국사회의 잘못된 통념에 가려져 들리지 않았던 피해자의 목소리와 경험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투운동이 가져온 ‘희망’이 결코 ‘허울’이 아닌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법조인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깊은 성찰과 변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결국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가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가 화두이다. #미투운동을 통해 수 많은 피해자들은 우리사회 정의를 새롭게 세워갈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길목에 있다. 무엇보다 피해생존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과거의 수동적인 피해자상을 거부하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다. 성폭력의 의미구성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근절의 토대는 성평등한 사회와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폭력은 사회현상과 유리된 실험실 비이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적인 문화와 폭력적인 일상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생·유지·강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폭력을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로 돌아보기가 필요하다. 피해·가해 당사자거나, 주변인으로, 일반 시민으로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해왔는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이윤택성폭력사건을 세상에 알린 김수희(2019) 연출은 한 토론회에서 “부디 듣는 일에 지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말하는 일에 지치지 않겠노라 약속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말은 #미투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새삼 일깨워준다.

무엇보다 성평등 사회가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성평등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효율적인 성평등·인권교육이 필요

하다. 사회구성원들이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성평등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성폭력 없는 사회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들은 #미투운동에 응답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변화했고 강해졌다. 결코 어제의 불평등·성차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결국 “미투, 이 싸움의 끝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닮아 있을 것이다”⁵⁾.

• 참고문헌 •

- 강병훈(20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성폭력범죄 전담조사제 및 전담재판부 의무화 등”,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724호) 검토보고서.
- 김수희(2019), “생존자의 관점에서 만들어보는 연극계의 문화, 규정”, 「분노가 지나간 자리, 다시 무대에 서다」, 이윤택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주최 이윤택성폭력사건 대응의 의의와 쟁점 토론회 자료집(2019. 11.26).
- 대검찰청(2018), 「범죄분석」.
- 송민정(2018), “2019년 예산 속의 여성”, 「미투운동, 예산을 바꾸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국회 여성·아동·인권 정책포럼 공동주최토론회 자료집(2018. 11. 8).
- 여성가족부(2019),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회의자료(2019. 8. 23)
- 윤지영(2018),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형사절차법적 개선방안 모색”, 『이화젠더법학』 제10권 제1호(통권 제22호).
- 이미경(2018),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와 무고죄 등 역고소 대응”,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 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아동·인권정책포럼, 국회의원 정춘숙·송희경·김수민·송기현·백혜련·표창원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2018. 11. 1).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2017), “성폭력 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는 감경요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 기자회견 자료(2017. 9. 14).
-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3&page=8&f_cate=&idx=3895&board_md=view
- 감이(2018), “#미투시민행동 상황실에서 온 편지”, 「나눔터」, 2018 상반기 Vol. 82,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 올림(2017),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 한국언론진흥재단(2018. 2. 27), Media Issue 4권 2호, <성폭력 피해 폭로 ‘미투’ 운동에 대한 국민 인식>, <http://www.kpf.or.kr/jsp/search/search.jsp>
- 한국여성단체연합(2019), 「제33차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 자료집.
- 뉴시스(2019. 11.20), ‘스쿨미투는 졸업하지 않았다’ 성·가정폭력 추방행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20_0000835632&cID=10809&pID=10800
- 서울신문(2019. 2.1), 안희정 실형 선고에 다시 힘 실리는 미투…2월 국회 미투 법안 속도낼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01500187&wlog_sub=svt_023
- 일다(2019. 4. 8),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폐미니즘 운동, 스쿨미투”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8436§ion=sc5§ion2=십대

5) 2018. 3. 15일에 있었던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발대식 퍼포먼스 문구임.